이동 중 운행중인 지게차와 부딪힘

재 해 개 요

'15. 10월 광주시 광산구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사업장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피재자가 운행중인 지게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기인물(지게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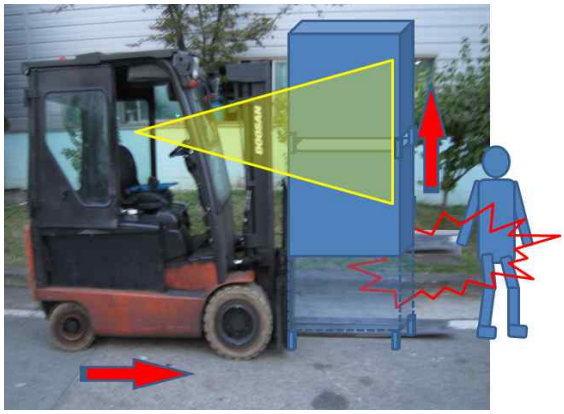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○ 피재자는 경기도 소재 금형 사업장 직원으로, 재해 당일 금형 시험생산을 위해 광주시 재해사업장에 도착하여 사업장내 도로에서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함

※기인물(지게차)

- 규격 : 3톤(전동식)	- 전장 : 2,377㎜	- 전폭 : 1,200㎜
- 최소선회반경 : 2,190㎜	- 속도 : 18km/h	

○ 지게차는 철재파레트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반하였으며, 속도는 10km/h 이내였음

○ 지게차는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0cm 가량 들어올린 상태로 운행하였으며, 이 경우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음

※포크에 철재파레트(폭 1,290㎜)를 2단으로 적재하면 높이는 1,800㎜이며,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0cm 들어올리면 적재물의 높이는 2.3m로 전방시야가 완전히 가리게 됨

○ 시야가 충분하지 않자 시야확보를 위해 포크를 들어올리는 조작 도중 피재자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

재해발생 원인

○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재자가 지게차나 화물차가 운행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함

○ 지게차에 적재물을 2단으로 높게 적재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함

○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지게차나 화물차가 수시로 운행되는 장소로 작업자의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함

○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정 높이로 적재하여 운행해야 함

○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

관련 법규

▸ 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**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

(내용) -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

▸ 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(화물적재시의 조치)**

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3.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